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22-125

제출년월일 : 2022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장애인 이동을 위한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와 센터의 운영방법 등을 반영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방법(안 제3조 ~ 제4조)

다. 수리비용 지원대상,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제6조)

라.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마.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바.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　　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 : 2022. 10. 13. ~ 11. 2.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새마포담당관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가족행복지원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 : 해당 없음

5) 제1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의결(2022. 11. 10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이란 법 제65조”를 “이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”로, “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”을 “보조기기 품목 중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센터를”을 “센터 운영을 위해”로, “위탁하여 운영”을 “지정 또는 위탁”으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위탁 및 운영·수리비용 지원)”을 “(운영·수리비용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탁·운영하는”을 “운영하는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(생 략) 2. “장애인휠체어 등”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「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수동휠체어,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. 3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-----이란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2조--- 보조기기 품목 중 ----------. 3. (현행과 같음)
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(생 략) ② 구청장은 센터를 사회복지분야 비영리법인, 비영리단체 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관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	제3조(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- 센터 운영을 위해 ---------- 지정 또는 위탁--------.
제4조(위탁 및 운영·수리비용 지원)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 ②·③ (생 략)	제4조(운영·수리비용 지원) <삭제> ①·②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

	같음)
제5조(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) ①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애인으로 하며,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탁·운영하는 센터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. ②(생 략)	제5조(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) ①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운영하는 - ---------- -. ②(현행과 같음)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○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

3. 미첨부 사유

○ 본 조례는 상위법인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인용 조항 정비, 운영방법의 변경 및 조례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4. 작성자

작성자 이름	복지동행국 장애인동행과 윤새린
연 락 처	02-3153-1684